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안	16152
-------------	---	-------

발의연월일 : 2018. 10. 31.

발의자 : 송갑석 · 신경민 · 이인영

홍익표 · 박광온 · 인재근

이 훈 · 안민석 · 윤관석

설 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 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 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p>